

의안번호	2205727
의 퇴 인	안호영 의원
회 답 일	2024.11.22.
추 계 번호	24B5263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9조의2 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	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(이하 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”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제1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9조의2 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	×	- 제1항: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본문참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‘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’를 삭제하는 내용임
 -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‘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’를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동 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, 개정안의 시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이 확대될 유인이 있음

[표 1]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(이하 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”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,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 ----- ----- -----.

자료: 고용노동부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행태 변화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자 수를 합리적으로 추계하여야 하나,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증가 규모를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